

#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

2023년 6월 26일

**INNOCEAN**

# 제1장 총 칙

## 제1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3조 (기능 및 권한)

① 위원회는 내부거래 투명성 및 주주권익의 보호 등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『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』 및 『상법』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거래
2. 주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  - 가. 보증, M&A 등의 주요 경영사항
  - 나. 주요 자산(지분)의 취득·처분
  - 다. 자기거래 집행 내역
3.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② 회사는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.

1.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점검
2.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
3. ESG경영 관련 중요한 정책 점검 및 추진계획
4.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및 실적
5. 기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## 제2장 구 성

### 제4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.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.

### 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‘위원장’이라 한다)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6조 (자문역)

-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역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② 자문역은 이사회에서 위촉하며 그 수는 2인 이내로 한다.
- ③ 자문역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회사의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④ 자문역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### 제7조 (임기)

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일치한다.

## 제3장 회 의

### 제8조 (종 류)

- ① 위원회의 회의(이하 '회의'라고 한다.)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9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 소집사유를 밝히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10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7일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 
단, 긴급을 요할 경우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### 제11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자문역은 의결권이 없으며,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 및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#### 제12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# 제13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제4장 보 칙

#### 제14조 (규정의 개정)

-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- ②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 시 이사회 결의로 별도 세부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

### 부 칙 (제1호, 2023.6.2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